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

2023. 4.



학생지원처 입학관리팀

I 모집인원

1. 전형별 모집인원

모집	71416 4	5	고집인원(명		
시기	전형명	정원 내	정원 외	계	비고
	학생부종합(교직적성우수자전형)	42	-	42	이월 인원 포함*
	학생부종합(전라남도교육감추천전형)	60	-	60	
	학생부종합(광주인재전형)	50	-	50	
	학생부종합(전남인재전형)	50	-	50	
	학생부종합(사회통합전형)	10	-	10	
수시	학생부종합(다문화가정전형)	8	-	8	
	학생부종합(장애인대상자전형)	-	10	10	
	학생부종합(농어촌학생전형)	-	10	10	
	학생부종합(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계층/ 한부모가족전형)	-	7	7	
	소계	220	27	247	
	수능위주(일반전형)	108	-	108	
	수능위주(장애인대상자전형)	-	-	-	
정시 (나군)	수능위주(농어촌학생전형)	-	-	-	수시 미충원 인원 발생 시
	수능위주(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계층/ 한부모가족전형)	-	-	-	이월하여 선발
	소계	108	-	108	-
	총계	328	27	355	-

* 2023학년도 정원 내 이월 인원 2명 반영

[※] 수시모집에서 미충원된 정원 내 모집인원은 수능위주(일반전형)으로 이월하여 선발하고, 정원 외 전형은 해당 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함

[※] 모집인원은 교육부의 정원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표 수시모집

1. 지원자격

전	형명	지원자격
학생부종합 (교직적성 우수 자전형)		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학생부종합 (전라남도교육감 추천전형)		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(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)을 이수한 졸업(예정)자로서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전라남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 ※ 이 전형 입학생에게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며, 졸업 후 전라남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여야 하고, 임용 후 5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함
	부종합 인재전형)	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(입학일부터 졸업일 까지)을 이수한 졸업(예정)자
학생부종합 (전남인재전형)		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(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) 을 이수한 졸업(예정)자
	공통	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다음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학생부 종합 (사회 통합 전형) 자립지원 대상아동		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제3조 제2호에 따른 '국가보훈대상자'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로 보훈(지)청장이 발행하는 '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' 발급 대상자
		- 아동복지법에 의거 인가된 아동복지시설에서 고등학교 입학일 부터 원서접수 마감일(졸업자는 졸업일)까지 거주한 자 ※ 단,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외 지원자는 아동복지법에 의거 인가된 아동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(원서접수 마감일 기준) 거주한 자에 한함
만학도		- 2024. 3. 1. 기준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자
학생부종합 (다문화가정전형)		고등학교 졸업자(예정)자 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-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모(친부)와 대한민국인 친부(친모)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(다만,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모(친부)가 과거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 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)

전형명	지원자격
학생부종합 (장애인대상자전형)	고등학교 졸업자(예정)자 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다음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-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시·군·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자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「장애인복지법」 에 의한 장애인 기준에 상응하는 자
학생부종합 (농어촌학생전형)	국내 정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(졸업예정자 포함)로 다음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- 유형 I (6년) : 중·고등학교 전과정 「지방자치법」제3조에 의한 읍·면 지역 또는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해당되는 도서벽지에 소재한 중·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(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)을 이수한 자로서 중·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·부모가 농·어촌 또는 도서·벽지에 거주한 자 - 유형표(12년) : 초·중·고등학교 전과정 「지방자치법」제3조에 의한 읍·면 지역 또는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해당되는 도서벽지에 소재한 초·중·고등학교 의 전 교육과정(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)을 이수한 자로서 초·중 ·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농·어촌 또는 도서·벽지에 거주한 자
학생부종합 (기초생활수급자/ 차상위계층/ 한부모가족전형)	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다음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(수급권자), 제2호(수급자), 제10호(차상위계층)에 의한 대상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또는 제5조의2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

2. 전형요소별 반영비율

전형명	1단계 (1,000점)	선발 비율	2단계 (1,000점)	선발 비율
학생부종합(교직적성우수자전형)		400%		
학생부종합(전라남도교육감추천전형)				
학생부종합(광주인재전형)	서류평가 100%	200%	1단계 점수 70% (700점) +	100%
학생부종합(전남인재전형)				
학생부종합(사회통합전형)				
학생부종합(다문화가정전형)	(1,000점)		면접 30% (300점)	
학생부종합(장애인대상자전형)		300%	,	
학생부종합(농어촌학생전형)				
학생부종합(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계층/ 한부모가족전형)				

[※] 학교생활기록부 내 '학교폭력 조치사항'은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시 반영

3.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및 최저학력기준

전형명	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및 최저학력 기준
학생부종합(교직적성우수자전형)	
학생부종합(전라남도교육감추천전형)	
학생부종합(광주인재전형)	
학생부종합(전남인재전형)	응시 제한 없으며,
학생부종합(사회통합전형)	수능최저학력기준을
학생부종합(다문화가정전형)	적용하지 않음
학생부종합(장애인대상자전형)	
학생부종합(농어촌학생전형)	
학생부종합(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계층/한부모가족전형)	

1. 지원자격

구분	지원자격
공통 지원자격	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,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*에 응시한 자 - 반영 영역: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2과목), 한국사 ※ 영역별 선택과목에 대한 응시 제한 없음
수능위주 (일반전형)	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,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에 응시한 자
수능위주 (장애인대상자 전형)	공통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 다음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-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시·군·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자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 기준에 상응하는 자
수능위주 (농어촌학생전형)	공통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 다음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- 유형 I (6년) : 중·고등학교 전 과정 「지방자치법」제3조에 의한 읍·면 지역 또는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해당되는 도서벽지에 소재한 중·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(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)을 이수한 자로서 중·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본인·부모가 농·어촌 또는 도서·벽지에 거주한 자 - 유형Ⅱ(12년) : 초·중·고등학교 전 과정 「지방자치법」제3조에 의한 읍·면 지역 또는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해당되는 도서벽지에 소재한 초·중·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(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)을 이수한 자로서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농·어촌 또는 도서·벽지에 거주한 자
수능위주 (기초생활수급자/ 차상위계층/ 한부모가족전형)	공통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 다음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(수급권자), 제2호(수급자), 제10호(차상위계층)에 의한 대상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또는 제5조의2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

2. 전형요소별 반영비율

전형명	반영비율 (반영총점)	선발비율	비고
수능위주(일반전형)			
수능위주(장애인대상자전형)	↓ ↓ 1000/		수능 백분위 및
수능위주(농어촌학생전형)	수능 100% (1,000점)	100%	등급 활용
수능위주(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계층/ 한부모가족전형)			

- ※ 백분위 반영 영역 : 국어, 수학, 탐구(2과목 평균)
- ※ 등급 반영 영역 : 영어(등급별 반영점수), 한국사(등급별 가산점)
- ※ 정원외 전형은 수시 미충원 인원 발생 시 이월하여 선발

3.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

- 가.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별 선택과목에 대한 응시제한 및 가산점 없음
- 나. 반영 영역 및 영역별 반영방법

과목	국어	수학	영어	탐구(2과목)	한국사	합계	
반영 방법	백분위	백분위	등급 (등급별 반영점수)	백분위	등급 (등급별 가산점)	-	
배점	250점	250점	250점	250점	-	1,000점	
비율	25%	25%	25%	25%	-	100%	
산출공식	(국어,수학,탐구(2개평균) 영역 백분위합 300 × 750 + 영어 등급별 반영 점수 +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						

※ 한국사 가산점으로 인하여 합계(1,000점)를 초과할 수 있음

〈영어 등급별 반영점수〉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 등 급	5등급	6등급	7등급	8등급	9등급
반영점수	250점	240점	230점	220점	210점	200점	190점	180점	170점

〈한국사 등급별 가산점〉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	7등급	8등급	9등급
가산점	2.	점	1.5	5점	1	점	0.5	5점	0점

다.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및 최저학력기준

전형명	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및 최저학력기준			
수능위주(일반전형)				
수능위주(장애인대상자전형)	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(국어, 수학,			
수능위주(농어촌학생전형)	영어, 탐구 2과목, 한국사)에 응시해야 히			
수능위주(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계층/ 한부모가족전형)	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음			